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개요 3.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수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나.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p.5) (1)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개요 3.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수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나.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p.5) (1)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u>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 그러지 아니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의 승인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u> 대통령령이 정하는 ~ 또한 같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 보완 - ‘물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절차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I.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2. 기본계획 작성방향(p.14) 다. 수자원 활용에 있어 우리나라의 불리한 수자원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수자원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는 등 친환경 수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물순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빗물 활용 확대와 누수저감을 통한 수자원 확보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신규 지방취수원 발굴 → 광역상수도 또는 인근 지자체 여유물량 활용의 순서로 검토하여야 한다.	II.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2. 기본계획 작성방향(p.14) 다. 수자원 활용에 있어 우리나라의 불리한 수자원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수자원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는 등 친환경 수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물순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기존시설 여유량 활용→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급수체계 조정→신규 지방취수원 발굴→담용수 또는 광역상수도 공급 순서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의 경우 단지내 하·폐수처리수 자체 재이용→공공하수처리장 등 외부 하수재이용수 활용→단지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여유량 인근 산단으로 공급 순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작성방향 구체화 - 물 이용 우선순위 및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하·폐수처리 재이용수 우선 활용방안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I.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1. 총설(p.16)	II.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1. 총설(p.16) 1.5 계획 수립 이력 - 최초수립부터 최근 변경(부분변경 포함) 수립까지 주요 내용, 승인 및 고시일, 고시번호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력 제시(신설) <table><tr><th>연번</th><th>구분</th><th>주요 내용</th><th>승인일</th><th>고시일</th><th>고시번호</th></tr><tr><td>1</td><td>최초수립</td><td>고도도입 등</td><td>'00.00.00</td><td>'00.00.00</td><td>000 고시 제0000-0000호</td></tr><tr><td>2</td><td>부분변경</td><td>배수지 증설 등</td><td>'00.00.00</td><td>'00.00.00</td><td></td></tr><tr><td>3</td><td>변경수립 (타당성 재검토)</td><td>...</td><td>'00.00.00</td><td>'00.00.00</td><td></td></tr><tr><td>4</td><td>1차 재수립 (법정 재수립)</td><td>...</td><td>'00.00.00</td><td>'00.00.00</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번	구분	주요 내용	승인일	고시일	고시번호	1	최초수립	고도도입 등	'00.00.00	'00.00.00	000 고시 제0000-0000호	2	부분변경	배수지 증설 등	'00.00.00	'00.00.00		3	변경수립 (타당성 재검토)	...	'00.00.00	'00.00.00		4	1차 재수립 (법정 재수립)	...	'00.00.00	'00.00.00		...	...	...	...	...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력 -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시 수립 이력 부재로 검토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총설 부분에 수립이력을 기재
연번	구분	주요 내용	승인일	고시일	고시번호																																	
1	최초수립	고도도입 등	'00.00.00	'00.00.00	000 고시 제0000-0000호																																	
2	부분변경	배수지 증설 등	'00.00.00	'00.00.00																																		
3	변경수립 (타당성 재검토)	...	'00.00.00	'00.00.00																																		
4	1차 재수립 (법정 재수립)	...	'00.00.00	'00.00.00																																		
...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제1편 수도정비계획 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 3.6.2 용수공급 계획(p.28) ○ <u>용수수급 전망결과 부족한 경우에는 물 수요관리를 통한 공급(상수도 사용량 저감, 빗물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등)계획과 상수도 확충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제시</u> - <u>최근 5년 이내 가뭄으로 인해 제한 및 운반급수 경험에 있거나 취수원별 공급 능력 분석결과, 가뭄 시 취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수 과부족과 무관하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량 절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u> * 물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량 절감계획 : 절수기기, 수도꼭지 수압조절, 중수도·빗물이용·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수용가내 물 절약전문업 등 수요절감을 뜻하며, 누수저감 등 공급체통의 절감이 아님. - <u>신규 확충계획은 인근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활용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u>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제1편 수도정비계획 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 3.6.2 용수공급 계획(p.28) ○ <u>물수요관리를 통한 공급계획과 상수도 확충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제시</u> - <u>일정 규모이상의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1일 1만톤 이상 사용하는 공장·발전소 등은 공업용수 수요량 중 재이용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검토 후 설정된 재이용 의무율에 대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사용하도록 계획</u> * 물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량 절감계획 : 절수기기, 수도꼭지 수압조절, 중수도·빗물이용·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수용가내 물 절약전문업 등 수요절감을 뜻하며, 누수저감 등 공급체통의 절감이 아님. - <u>공업용수 신규 확충계획은 물재이용 기본(관리)계획에 근거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활용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에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입주업종 특성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립</u>	▪ 하·폐수처리 재이용수 활용방안 등 용수공급 계획구체화 -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업용수 다량 사용사업장에 대해 용수공급계획 수립 시 재이용 의무사용에 관한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에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수립하며, 급수구역별 연계가능성, 시설확장 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충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하며, 급수구역별 연계가능성, 시설확장 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충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생활용수 신규 확충계획은 급수구역별 연계가능성, 시설확장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충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용수공급 계획 수립 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급수구역 간 조정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4.1 수원 및 취수시설 4.1.1 수원의 결정(p.30) ○ 기후변화에 따라 장래 해당 지역의 장기적 물부족 가능성도 검토하여 각종 수원(소규모 수원 포함)의 보전·활용 가능성도 수원 결정에 고려	4.1 수원 및 취수시설 4.1.1 수원의 결정(p.30) ○ 기후변화에 따라 장래 해당 지역의 장기적 물부족 가능성도 검토하여 각종 수원(소규모 수원 포함)의 보전·활용 가능성도 수원 결정에 고려 - 지하수 저류지, 강변여과수, 농업용저수지 등 지역내 물사용 형태, 산단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업자가 대체수자원 개발·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후 제시 필요	▪ 대체수자원 우선활용 구체화 - 장래 댐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수원의 결정시 지역내 지하저류지 등 대체수자원을 우선 활용 검토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토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3 송·배수시설 4.3.1 급수구역의 설정 (p.32) ○ <u>가능한 급수구역 상호간의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u>	4.3 송·배수시설 4.3.1 급수구역의 설정 (p.32) ○ <u>급수구역 상호간의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u> ○ <u>대규모 물류창고 등이 입지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소화전 등이 설치 가능토록 계획</u>	▪ 소방용수를 고려한 급수구역 검토방향 신설 - 대규모 물류창고 등이 입지한 지역은 송·배수 시설 급수구역에 소방용수량 포함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고, 소화용수를 고려한 시설규모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신설
4.3.3 송·배수계획 (p.33) ○ 송·배수되는 상수도의 유량 및 압력 변화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계획을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수립 - GIS가 구축된 경우 연계계획을 포함하고, 미 구축된 경우 GI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상·하수도시설 통합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	4.3.3 송·배수계획 (p.33) ○ 송·배수되는 상수도의 유량 및 압력 변화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계획을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수립 - GIS가 구축된 경우 연계계획을 포함하고, 미 구축된 경우 GI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상·하수도시설 통합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 - <u>배수시설(배수지, 배수관로 등) 규모 결정 시, 소방용수를 반영한 시설계획(압력 및 손실수두, 유속 등) 검토·반영</u>	▪ 소방용수를 고려한 송·배수 계획 검토하도록 구체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5.1 시설개량 기본방향 설정(p.34) ○ 시설개량 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 시설 기술진단(정수장, 관망) 결과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비전 달성을 위한 개량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 시설개량 계획은 생산량 1m³당 CO₂ 배출량, 정수전력 원단위, 재생에너지 이용률, 슬러지 유효이용률의 현재(개선전) 수준 대비 시설개량 및 운영조건 개선 후 목표를 제시 - 시설개량 계획은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되 소요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시	5.1 시설개량 기본방향 설정(p.34) ○ 시설개량 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 시설 기술진단(정수장, 관망) 결과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비전 달성을 위한 개량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 시설개량 계획은 생산량 1m³당 CO₂ 배출량, 정수전력 원단위, 재생에너지 이용률, 슬러지 유효이용률의 현재(개선전) 수준 대비 시설개량 및 운영조건 개선 후 목표를 제시 - <u>정수시설 개량 계획과 관련하여 고도 정수처리 도입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19.5, 환경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작성</u>	▪ 고도정수처리 도입방향 신설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른 적정성 검증 절차를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명확하게 이행토록 구체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5.3 정수시설 개량 계획(p.36) 단위시설별 운영 실태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라 최적의 정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량방안을 제시하고, 원수 수질, 수질 관련 민원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5.3 정수시설 개량 계획(p.36) 단위시설별 운영 실태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라 최적의 정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량방안을 제시하고, 원수 수질, 수질 관련 민원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을 포함하여 <u>계획하되,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수질 기초자료 수집, 각종 대안 검토(경제성, 타당성 등) 수행</u>	고도정수처리 도입방향 신설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른 적정성 검증 절차를 정수시설 개량 계획에 포함하여 이행토록 구체화
5.4 송·배수시설 개량계획(p.36) 송·배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로 및 시설물내의 수리적 변화(압력 및 손실수두, 체류시간, 유속 등) 및 수질적 변화(잔류염소 등)를 고려	5.4 송·배수시설 개량계획(p.36) 송·배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로 및 시설물내의 수리적 변화(압력 및 손실수두, 체류시간, 유속 등) 및 수질적 변화(잔류염소 등)를 <u>고려하되, 대규모 물류창고 등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용수량을 포함하여 적정 압력 및 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u>	송·배수시설 개량계획 내 소방용수를 검토방향 구체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9장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계획(신설) (p.44)	제9장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계획(신설) ○ <u>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취수원, 취·정수 시설, 송배수시설 등)에서 지자체 수도 시설 여건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u> - <u>그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에너지 절감량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량 등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한다.</u> ○ <u>저에너지형(설비 고효율화, 운영효율 향상 등) 수돗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감축량을 제시</u> - <u>사업장 운영현황 분석, 설비 성능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별 에너지절감 방안, 절감 가능량 및 소요 사업비를 산출한다.</u> ○ <u>태양광,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 및 생산량을 제시</u> - <u>사업장 입지여건, 운영특성에 적합한 사업장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열, 소수력, 풍력 등) 도입방안, 생산가능량 및 소요 사업비를 산출한다.</u> ○ <u>온실가스 저감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u>	▪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 계획 신설 -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저감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9장을 신규 신설하여 기본방향 및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편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p.50) ○ 수도시설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수원,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 및 공급시설(도·송수시설, 배수시설, 급수시설 등)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제3편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p.50) ○ 수도시설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수원,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 및 공급시설(도·송수시설, 배수시설, 급수시설 등)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u>사고 발생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단수 발생 가능 구간을 선정하고, 복선화, 비상연계 등 안정화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계획 수립</u>	▪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구체화 - 수도사고에 따른 단수 가능성 분석 및 비상연계, 복선화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정화 계획 수립 기준 반영
부록.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3. 생활용수 수요량 3.2 장래인구 예측(p.76) (1) 자연적 증가인구는 ~ (중략) ~ 적용한다. (2)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분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주민이 입주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인정(인가, 고시, 공사착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키고, 이 경우 개발계획 유형별, 도시 특성별 외부유입률을 적용, 순수한 외부유입 인구만을 산정 반영한다.	부록.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3. 생활용수 수요량 3.2 장래인구 예측(p.76) (1) 자연적 증가인구는 ~ (중략) ~ 적용한다. (2)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분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주민이 입주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인정(<u>택지개발 계획승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사착수</u>)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키고, 이 경우 개발계획 유형별, 도시 특성별 외부유입률을 적용, 순수한 외부유입 인구만을 산정 반영한다.	▪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용수 수요량 반영 구체화 - 개발계획별 추진 절차에 맞춰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 경우에 한하여 장래 수요량이 반영토록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 공업용수 수요량 4.1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p.88) (1) 공업용수 수요량은 ~ (종락) ~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산단은 유사 사례(업종, 인근지역)의 <u>부지원단위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문헌 또는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하되 산업단지의 개발에서 입주시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조성 후 경과시점에 따른 단계별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u> (3) 생활용수 수요에 포함된 용수수요는 공업용수 수요 산정시 중복되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업용수 수요량 4.1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p.88) (1) 공업용수 수요량은 ~ (종락) ~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산단은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개발계획이 <u>확정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동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인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 계획 승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된 경우 등)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고, 유사 사례(업종, 인근지역)의 부지원단위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문헌 또는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하되 산업단지의 개발에서 입 주시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조성 후 경과시점에 따른 단계별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u> (3) 생활용수 수요에 포함된 용수수요는 공업용수 수요 산정시 중복되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산단의 공업용수 수요량 반영 구체화 -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개발계획 확정까지 소요기간(수년) 감안,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